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새 마 을 과

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구 미 시

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박정희대통령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을 설립하고,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사업, 기본재산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6조)

다. 임원, 이사회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～제9조)

라. 운영재원, 수익사업 및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～제12조)

마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바. 공유재산의 관리위탁·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사. 보고·검사, 공무원의 파견·겸임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～제17조)

아.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, 제1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,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시설의 관리와 교육·연구·학술 활동 등을 통하여 구미시의 역사·문화자산 보존·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박정희대통령 생가,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등 대통령 기념시설 운영 및 관리
2. 박정희대통령 추모·기념사업
3. 박정희대통령 유품 등 자료 조사·수집·관리·보존

4. 박정희대통령의 업적과 가치관을 기리기 위한 전시·교육·연구·편찬 활동

5. 박정희대통령 기념시설 및 기념사업 운영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

6. 관련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
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 등) ① 재단의 정관에는 「민법」 및 「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 등 자산에 관한 사항

5. 이사와 감사의 정수·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
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7. 이사회의 운영

8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9. 예산과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1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
12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13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
14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재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.

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(직원 등)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

다.

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③ 직원의 보수는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재원)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
2. 재단 자체 수입금

3. 그 밖의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

제11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(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용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

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,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5조(보고 및 검사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~ ③ 생 략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② ~ ③ 생 략

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박정희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·사업비·운영비(인건비, 경상비 등)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박정희대통령 기념시설 운영체계 일원화 및 전문적인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5년간 필요한 비용을 추계함

○ (기본재산) 재단 설립목적과 고유사업 및 사업 확장, 조직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

○ (사업비) 계속사업은 2021~2025년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기초로 산정하고, 신규사업은 주요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및 구미시 출연기관의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산정하되, 2차년도 이후에는 2020~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(2.8%)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계

○ (인건비)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설립 기준」의 조직설계 기준에 따라 초기 정원은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,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하여 재단 소속 직원의 직급별 인건비 산출

○ (경상비)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설립 기준」에서 경상비는 인건비의 25% 이하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현 비용추계에서는 인건비의 20%이하(17%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상비 산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7)	2차년도 (2028)	3차년도 (2029)	4차년도 (2030)	5차년도 (2031)	합계
세출	○ 기본재산	300	-	-	-	-	300
	○ 사업비	1,604	1,649	1,695	1,742	1,791	8,481
	○ 인건비	770	827	1,007	1,115	1,185	4,904
	○ 경상비	135	146	176	197	210	864
	합계	2,809	2,622	2,878	3,054	3,186	14,549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7)	2차년도 (2028)	3차년도 (2029)	4차년도 (2030)	5차년도 (2031)	합계
시 비	2,809	2,622	2,878	3,054	3,186	14,549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새마을과 손은주(☎480-6827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재단 설립 1차년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2,809	
기본재산	300	· 300,000,000원 × 1식 = 300,000,000원
사 업 비	1,604	· 생가 및 역사자료관 관리·운영 : 950,000,000원 ·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: 200,000,000원 · 관람동선 개선 및 시설물 점검 : 40,000,000원 · 유품 기증 및 기증자 관리 : 40,000,000원 · 대통령 자료 수집·DB화 및 보존관리 : 50,000,000원 · 박정희대통령 탄신·추모행사 : 95,000,000원 · 투어프로그램 운영 : 20,000,000원 · 시민참여 공모전 및 전시회 : 80,000,000원 · 시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: 54,000,000원 · 산업유산투어 프로그램 운영 : 25,000,000원 · 찾아가는 교육 및 역사체험교실 : 50,000,000원
인 건 비	770	· 사무총장 - 90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90,000,000원 · 본부장 - 70,000,000원 × 2명 × 1년 = 140,000,000원 · 대리 - 38,878,500원 × 4명 × 1년 = 155,514,000원 · 사원 - 34,969,500원 × 11명 × 1년 = 384,664,500원
경 상 비	135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 등) - 135,000,000원 × 1식 = 135,000,000원

※ 2021~2025년 관련 사업 예산 및 유사 사업 등을 참고하여 산정

2. 재단 설립 2차년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2,622	
사 업 비	1,649	· 생가 및 역사자료관 관리·운영 : 976,000,000원 ·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: 206,000,000원 · 관람동선 개선 및 시설물 점검 : 42,000,000원 · 유품 기증 및 기증자 관리 : 41,000,000원 · 대통령 자료 수집·DB화 및 보존관리 : 51,000,000원 · 박정희대통령 탄신·추모행사 : 97,000,000원 · 투어프로그램 운영 : 21,000,000원 · 시민참여 공모전 및 전시회 : 82,000,000원 · 시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: 56,000,000원 · 산업유산투어 프로그램 운영 : 26,000,000원 · 찾아가는 교육 및 역사체험교실 : 51,000,000원
인 건 비	827	· 사무총장 - 92,520,000원 × 1명 × 1년 = 92,520,000원 · 본부장 - 71,960,000원 × 2명 × 1년 = 143,920,000원 · 대리 - 39,967,098원 × 4명 × 1년 = 159,868,392원 · 사원 - 35,948,646원 × 12명 × 1년 = 431,383,752원
경 상 비	146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 등) - 146,000,000원 × 1식 = 146,000,000원

※ 2020~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(2.8%)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

3. 재단 설립 3차년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2,878	
사 업 비	1,695	· 생가 및 역사자료관 관리·운영 : 980,000,000원 ·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: 208,000,000원 · 관람동선 개선 및 시설물 점검 : 42,000,000원 · 유품 기증 및 기증자 관리 : 41,000,000원 · 대통령 자료 수집·DB화 및 보존관리 : 51,000,000원 ·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: 25,000,000원 · 연구 발간 활동 : 13,000,000원 · 박정희대통령 탄신·추모행사 : 98,000,000원 · 투어프로그램 운영 : 22,000,000원 · 시민참여 공모전 및 전시회 : 82,000,000원 · 시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: 56,000,000원 · 산업유산투어 프로그램 운영 : 26,000,000원 · 찾아가는 교육 및 역사체험교실 : 51,000,000원
인 건 비	1,007	· 사무총장 - 95,110,560원 × 1명 × 1년 = 95,110,560원 · 본부장 - 73,974,880원 × 3명 × 1년 = 221,924,640원 · 대리 - 41,086,177원 × 6명 × 1년 = 246,517,062원 · 사원 - 36,955,208원 × 12명 × 1년 = 443,462,496원
경 상 비	176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 등) - 176,000,000원 × 1식 = 176,000,000원

※ 2020~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(2.8%)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

4. 재단 설립 4차년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3,054	
사 업 비	1,742	· 생가 및 역사자료관 관리·운영 : 1,005,000,000원 ·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: 212,000,000원 · 관람동선 개선 및 시설물 점검 : 43,000,000원 · 유품 기증 및 기증자 관리 : 42,000,000원 · 대통령 자료 수집·DB화 및 보존관리 : 53,000,000원 ·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: 28,000,000원 · 연구 발간 활동 : 15,000,000원 · 박정희대통령 탄신·추모행사 : 100,000,000원 · 투어프로그램 운영 : 23,000,000원 · 시민참여 공모전 및 전시회 : 84,000,000원 · 시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: 59,000,000원 · 산업유산투어 프로그램 운영 : 26,000,000원 · 찾아가는 교육 및 역사체험교실 : 52,000,000원
인 건 비	1,115	· 사무총장 - 97,773,656원 × 1명 × 1년 = 97,773,656원 · 본부장 - 76,046,177원 × 3명 × 1년 = 228,138,531원 · 대리 - 42,236,590원 × 7명 × 1년 = 295,656,130원 · 사원 - 37,989,954원 × 13명 × 1년 = 493,869,402원
경 상 비	197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 등) - 197,000,000원 × 1식 = 197,000,000원

※ 2020~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(2.8%)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

5. 재단 설립 5차년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3,186	
사 업 비	1,791	· 생가 및 역사자료관 관리·운영 : 1,020,000,000원 ·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: 217,000,000원 · 관람동선 개선 및 시설물 점검 : 43,000,000원 · 유품 기증 및 기증자 관리 : 42,000,000원 · 대통령 자료 수집·DB화 및 보존관리 : 53,000,000원 ·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운영 : 40,000,000원 · 연구 발간 활동 : 21,000,000원 · 박정희대통령 탄신·추모행사 : 101,000,000원 · 투어프로그램 운영 : 24,000,000원 · 시민참여 공모전 및 전시회 : 86,000,000원 · 시민 토론회 및 포럼 개최 : 63,000,000원 · 산업유산투어 프로그램 운영 : 26,000,000원 · 찾아가는 교육 및 역사체험교실 : 55,000,000원
인 건 비	1,185	· 사무총장 - 100,511,318원 × 1명 × 1년 = 100,511,318원 · 본부장 - 78,175,470원 × 3명 × 1년 = 234,526,410원 · 대리 - 43,419,214원 × 7명 × 1년 = 303,934,498원 · 사원 - 39,053,673원 × 14명 × 1년 = 546,751,422원
경 상 비	210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 등) - 210,000,000원 × 1식 = 210,000,000원

※ 2020~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값(2.8%)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산정

소 관 부 서		새 마 을 과
입 안 자	과 장	조 희 태
	팀 장	김 동 균
	담 당 자	손 은 주 (480-6827)